

기안용지

(전화: 602-9553)

| | | |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분류기호 문서번호 | 도정 30370-5126 | | 시행상 특별취급 |
| 보존기간 | 영구·중영구. 10. 5. 3. 1. | 시 장 | |
| 수신처 보존기간 | | 수령 | |
| 시행일자 | 87. 11. | 11. 18 | |
| 보조 기 관 | 구성장 | 협 조 기 관 | 문 서 통 제 |
| | 부구성장 | | |
| | 도시정비국장 | | |
| 기안책임자 | 도시정비국장 | 도시정비국장 지적국장 87.11.12 | 발 |
| 경유 수신 참조 | (제 1안) 내부검정 | 발 신 영 의 | 87.11.18 통정 15.02 |
| 제 목 |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,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및 변경 지적승인 | | |
| 1. 건설부 고시 제 521호(86. 11. 17)로 변경검정된 도시계획 용도 | | | |
| 지역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752호(87. 10. 29)로 검정된 변경검정된 도시계획 | | | |
| 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이 외하 | | | |
| 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고자 합니다. | | | |
| 가. 지적승인 조서 | | |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 용도지역(주거지역) 변경 지적승인 조서 | | | |
| 구분 | 도시계획 용도지역 | 위 척 | 면 적 (㎡) |
| 지정 | 자연농지 지역 | 경사도 산출량 29-1인터 | 77,807 |
| | | | 용도지역변경 |

원본대조필

도시정비과에보관
원본은강서구청

87.11.18
도시정비과

87.11.18
도시정비과

| 번호 | 구분 | 등급 | 류번 | 특원(m) | 연장(m) | 시점 | 종점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변경 | | 주거지역 | | 강서구 신월동 39-1임대 | | 77.807 | | |
| *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및 변경지적승인 조사 | | | | | | | | |
| 1 | 신설 | 소로 | 31 | 6 | 21.5 | 신월동 912-8 | 신월동 912-9 | 과목수 이치 이로 |
| 2 | 거점 | " | " | 4 | 90 | 목동 517-17 | 목동 517-20 | 폐지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3 | 거점 | " | " | " | 62 | 목동 517-13 | 목동 517-22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4 | 거점 | " | " | " | 15 | 목동 517-9 | 목동 517-10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5 | 거점 | " | " | " | 33 | 목동 517-28 | 목동 517-27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6 | 거점 | " | 2 | 10 | 801 | 신정동 222-2 | 신정동 278-9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7 | 거점 | " | " | " | 242 | 신정동 276-26 | 신정동 266-3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8 | 거점 | " | " | " | 287 | 신정동 268-1 | 신정동 211-4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
| 번호 | 구분 | 종급 | 등급 | 특원(가) | 연장(가) | 사정 | 종점 | 비고 |
|----|----|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9 | 거점 | 소로 | 2 | 70 | 223 | 신정동 249-28 | 신정동 206-14 | 역지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10 | 거점 | " | " | 8 | 81 | 신정동 243-5 | 신정동 253-17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11 | 거점 | " | 3 | 6 | 250 | 신정동 265-3 | 신정동 212-5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12 | 거점 | " | " | " | 120 | 신정동 256-5 | 신정동 168-7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13 | 거점 | " | " | " | 244 | 신정동 233-6 | 구로구고척동 37-3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14 | 거점 | " | " | " | 200 | 신정동 233-5 | 구로구고척동 28-1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15 | 거점 | " | 2 | 8 | 54 | 신정동 224-4 | 구로구고척동 28-2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15 | 거점 | " | " | " | 50 | 구로구고척동 28-2 | 구로구고척동 28-2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| 17 | 거점 | " | " | " | 216 | 신정동 22-6 | 신정동 204-1 | " |
| | 변경 | " | " | " | " | " | " | |

나. 지적승인 도면 : 광복도면과 광복.

(제 2면)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

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지적승인,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승인및

변경 지적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521호(86. 11. 17)로 변경검정된 도시계획 용도

지역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752호(87. 10. 29)로 검정된 변경 검정된 도시계

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 5조 구정이 의

거 지적승인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시는 공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적소용자및 이해

관계인이게 보입니다.

1987. 11.

서울특별시

감재
11-13

장. 지적승인 도시

(제 1면)을 "가"로 이격시행

나. 지적승인 도면 : 광복도면과 광복(상부)

(제 3면)

수 신 : (공부) 과장

발신 : 시장

참 조 : 업무담당관

제 목 : 관보 게재 의뢰

1. 법령과 같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, 도시계획(도시) 지적승인 및 변경 지적승인

사정을 관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지적승인, 도시계획시설

(도토) 지적승인 및 변경 지적승인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 13조

첨 부 : 고시본 사본 2부. 끝.

(제 4 연)

수 신 : 건설부장관(서울특별시)

발신: 시장(구정장)

참 조 : 도시시설계획과(도시계획과, 시설계획과장)

제 목 : (같은건) 보고

1. 건설부고시 제 521호(86. 11. 17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 용도

지역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752호(87. 10. 29)로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

시설(도토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조 규정의 의거

지적승인 하얏기 이름 보고 합니다.

첨 부 : 1. 2서문서본및 도면 각 1부.

(제 5안)

수 신 : 서울특별시청

발신 : 구청장

출 조 : 시민과장

제 목 : 시장 직인 납인 요청

1. 다음과 같이 시장 직인을 납인 요청합니다.

가. 근 거 : 서울특별시 위임권규정(서울특별시 훈령 제 64호

87. 3. 12)

나. 분석명 : 1) 권보 기재 의뢰문

2) 건설부 보고문

첨 부 : 1. 권보 기재 의뢰문 사본 1부.

2. 건설부 보고문 사본 1부. 끝.

(제 6안)

수 신 : 수신부장

발신 : 구청장

제 목 : (공문)용보

1. 건설부고서 제 521호(86. 11. 17)로 변경검정된 도시계획 용도지

영및 서울특별시 고서 제 75호(87. 10. 29)로 검정된 변경 검정된 도시계획

시업(도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조 규정이 의

거 지적송인 하였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하거 바랍니다(바람)

첨 부 : 1. 고시본 사본 1부.

12.11.27
주청장

2. 지적고시 도면 사본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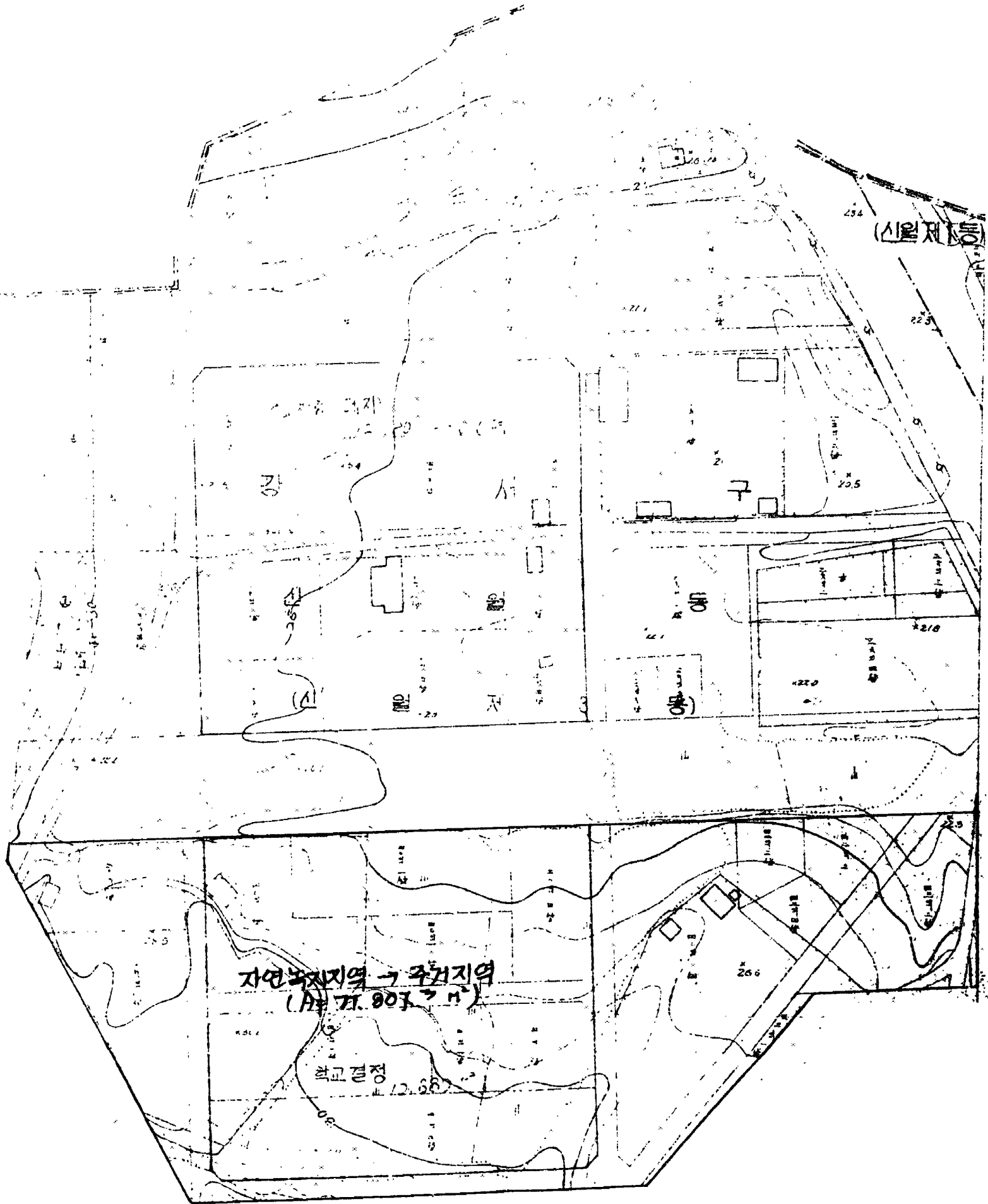
— 구로구청 : 구로구 관계도면

— 계약부서 : 도청 30310-5547(87. 11. 4)호 참조. 끝.

수신처: 구로구청장(도시정비과장), 주택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, 산업과,

건설관리과, 모퉁과, 수도공식과, 북2동장, 신정1동장, 신정2동장, 신원3동장

신원 4동장.



자연농촌지역 -> 주거지역
(1977. 7. 30. ~ 7. 31.)



신촌오거리

신

촌

신

(신

촌

신

신촌 (신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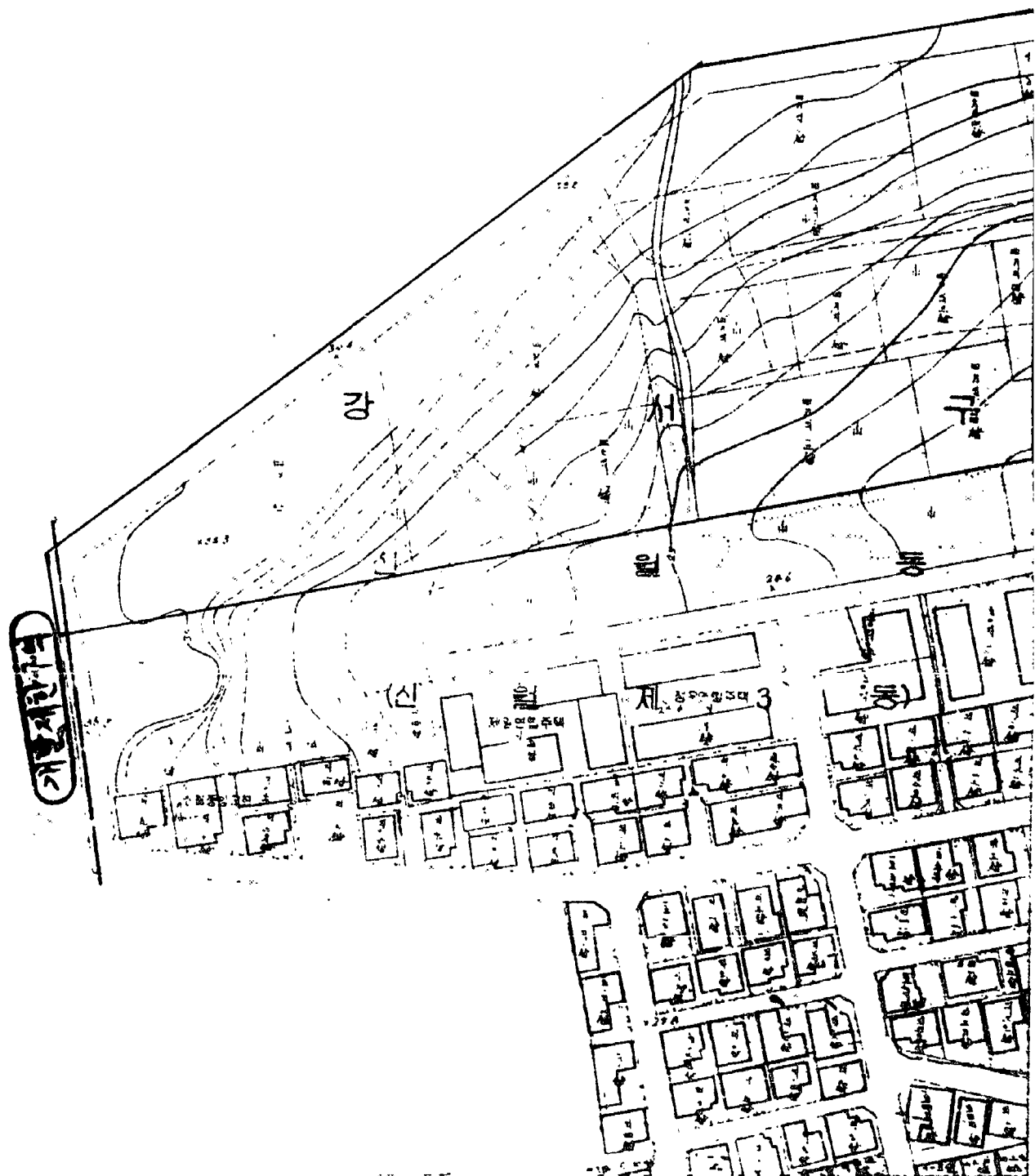
20.0

1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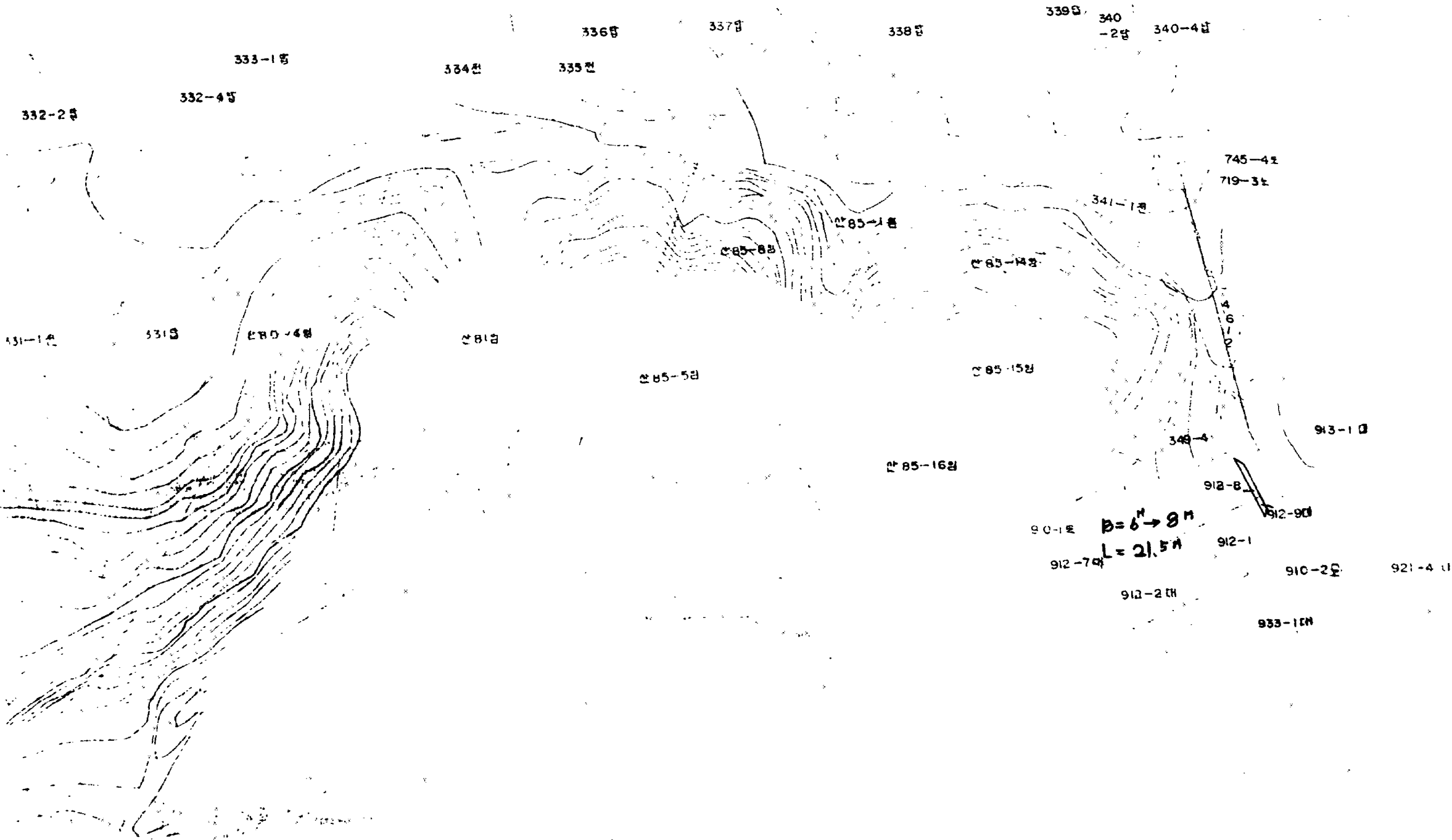
5.0

5.0

지적현황도







$B = 6^m \rightarrow 9^m$
 $L = 21.5^m$

913 3 대

914. 2

913-9 대

919 도

913-2 대

913-10 대

913-1 대

910-1 도

912-7 대

910-2 도

912-1 대

912-2 대 (임야) 도대조필

912-3 대

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

지: 1/2000, 1/2000, 1/2000

면적: 1,200.00㎡, 1,200.00㎡, 1,200.00㎡

본도면은 불특히 여러 공동연수 1 대

912-4 대

905

938-7 대

938 도

1415 933-6 대

933-2 대

